

## 사무분장 규정

제정 1994. 04. 15.  
제79차 개정 2021. 02. 0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정함으로써 사무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본 대학교의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본 대학의 부속 한방병원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관련 사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동일하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업무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부서내의 분장)** 부서내의 계별 또는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2장 총장 직속 기구

**제5조(비서실)** 비서실은 총장 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전부개정 2018.11.27., 2019.07.04]

### 제3장 대학교 본부

#### 제1절 교육연구처

[명칭변경 2019.07.04.]

**제6조(교무·연구팀)** 교무·연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구처장 직인 관수 (개정 2020.05.13)
2. 교무관계 예규
3. 교무위원회 소집 및 사무처리
4. 교무 통계
5. 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
6. 교원 승진, 강임 관계
7. 교원 기간제 임용 관계
8. 교원 인사 관계 기본 통계
9. 교원 위촉 및 교원 인사에 관한 기록 보관 및 유지
10. 교원 제증명 발급 관계
11. 교원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관리
12. 기타 교원 인사 일반에 관한 사항
13. 교원 교육훈련
14. 전직, 전보 관계

15. 휴직, 복직 관계
  16. 직위해제, 정직관계
  17. 교원 의원면직, 정년퇴직, 직권면직, 파면 관계
  18. 교원 복무 총괄에 관한 사항
  19. 교원 연구실 및 근무에 관한 사항
  20. 교원 포상 관계
  21. 교원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교원 재심에 관한 사항
  23. 교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24. 교수업적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단과대학 심의결과 최종확인
  25. 교원의 사회봉사 활동관리
  26. 교원의 국내·외 출장 중 공무에 관한 사항
  27. 교원의 학술연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학술연구진흥 기초계획 및 정책수립
  29. 학술심의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0. 학술연구활동지원 연구비 배정 및 관리
  31. 학술연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2.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교원의 국내·외 파견 및 연수
  34. 교원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35. 교원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
  36. 학회 개최 지원금 업무
  37. 연구소 설치 신청 및 실적평가 업무
  38. 연구소 지원 등 연구소에 관한 일반적 사항
  41. 연구윤리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2.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부개정 2018.11.27]

**제7조(학사지원팀)** 학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사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사제도 기본계획 수립,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사관리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업관리의 적정성, 운영성과 등 분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각종 지표관리(학사분야)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공교과위원회 및 교과과정개발위원회의 위촉현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11. 교양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협의 진행에 관한 사항
12. 강의평가 등 교육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우수강의평가 근거개발 및 강의 효과검증 등 강의 질 개선 등)
13.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4. 수업시간표에 관한 사항
15. 수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16.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17. 소수집단학생 수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8. 수업 진행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출결관리(출결관리시스템 포함), 휴/보강, 출석부 관리, 결석자 상담일지 등]
19. 전임교원 책임시간 관리에 관한 사항(초과시간, 외래출강 등)
20. 책임시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21. 강의실 관리(물품구입, 대여 및 기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2.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
23. 집중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학적변동(제적, 재입학 및 휴·복학 등) 및 학적통계에 관한 사항
25. 학적 데이터(학적부 등재) 및 학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26. 학적 조회 및 회보에 관한 사항
27. 편입학 및 재입학 여석 산출에 관한 사항
28. 전공 배정에 관한 사항
29. 다전공(복수·융합·부전공)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0. 전과(부) 및 학과(부)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
31. 교직 이수자 선발 및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32. 교직 교과과정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13.)
33. 교직과정 수업관리(시간표 배정, 수업 상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13.)
34. 교직 적·인성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13.)
35.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13.)
36.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이수 예정자 배정, 순회지도 등) (신설 2021.01.13.)
37.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13.)
38. 교원양성위원회 및 교직과정 운영 실무 위원회에 관한 사항
39.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40. 학기인정, 성적처리 및 학사경고·유급에 관한 사항
41. 학점인정(편입학자 및 장·단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42. 진급, 수료, 졸업 및 학위수여식에 관한 사항
43. 졸업사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44. 제증명발급용 총장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45. 증명서발급(한글, 영문)에 관한 사항
46. 자동증명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4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전부개정 2020.10.16.]

#### 제8조(학사운영팀) (조삭제 2020.10.16.)

**제9조(미래교육혁신원)** ① 미래교육혁신원에는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20.10.16.)

②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0.16.)

1. 대학교육혁신 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수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역량진단 기획, 운영, 분석,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4. 역량기반 교과/비교과 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5. 교육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6. 학내 비교과과정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7. 학내 비교과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8. 교과/비교과 인증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9. 교육평가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0. 교육혁신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1. 비교과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2.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20.10.16.)

③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적 수업모델 개발,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수업 질 개선을 위한 혁신적 교수법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교수법 관련 워크숍 등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02.04.)
4. 강의 촬영 및 수업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교수법 관련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6.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적 학습법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1.02.04.)
7. 학습법 관련 워크숍 등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02.04.)
8. 학습법 자료 개발 및 학습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9.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원격교육 질 관리에 관한 사항**
11. e-러닝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외부기관과의 e-러닝 공동 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MOOC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02.04.)
15. 혁신적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6. 수업 기자재 관리 및 수업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27.] [조명변경 2019.07.04] [전부개정 2019.07.04]

#### 제2절 기획평가처

[명칭변경 2019.07.04.]

**제10조(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0.16.)

1.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조정(개정 2020.10.16.)
  2. 학교 비전 및 이념 업무
  3.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추진
  4. 직제 신설·개편 및 정원 조정(개정 2020.10.16.)
  5. 학생 모집단위 설치, 폐지 및 정원 조정
  6. 교직원 수급계획 수립·조정
  7. 학칙 및 제규정 제정, 개폐 및 관리
  8. 제안제도
  9. 국고지원금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개정 2020.10.16.)
  10. 예산편성·조정 및 심사분석(개정 2020.10.16.)
  11. 예산통제(개정 2020.10.16.)
  12. 학생 납입금 및 교직원 보수 책정
  13. 정부 재정지원사업 업무 총괄
  14. 장기 시설계획 수립 및 조정(개정 2020.10.16.)
  15. 공간변경 및 유지·관리
  16. 법인이사회,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 업무
  1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부개정 2018.11.27]

**제11조(평가성과관리팀)** 평가성과관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5. 행정부서, 학과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부개정 2018.11.27., 2019.07.04., 2020.05.13] [조명변경 2019.07.04]

**제11조의2(감사팀)** 감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법무 업무에 관한 사항
3.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05.13]

### **제3절 학생행복처**

[명칭변경 2019.07.04.]

**제12조(학생행복팀)** 학생행복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행복처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학생 통계에 관한 사항(학생 기록부 관리)
3. 통학 관련 서류 발급
4. 상지미디어센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5. 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시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학, 학자금융자 등의 관련 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항
8. 학위복 관리에 관한 사항
9. 학생 상벌
10. 학생지도위원회 운영 및 학생지도대책 수립
11. 학생 자율활동 및 자치기구의 지도 및 지원

12. 학생 수혜 경비 예산 편성 및 지도
13. 학생 동원에 관한 사항
14. 학생 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학생 보건,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6.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18. 졸업준비에 관한 사항
19. 학군단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0. 신입생 예비대학에 관한 사항
21. 학생증 발급 등의 각종 학생민원 업무 대행
22. 교내 각종 정보 안내
23.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
24. 생활협동조합 및 복지시설에 관한 업무
25. 신입생 입학식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26.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호 변경 2020.05.13)  
[전부개정 2018.11.27., 2019.07.04] [조명변경 2019.07.04]

**제13조(상지대학교사회봉사단)** 상지대학교사회봉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봉사활동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시행
3. 사회봉사활동의 조직·지원 및 관리
4. 사회봉사 관련 동아리 지원
5.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및 평가
6. 사회봉사에 관한 대외협력 및 연락조정
7. 국제봉사활동의 개발·지원
8. 사회봉사 사례발표·유공자 포상 및 소식지 발간
9.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부개정 2018.11.27]

**제14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도우미 운영 포함)
4.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부개정 2018.11.27]

**제15조(학생행복상담센터)** 학생행복상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0.16.)

1.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2. 집단상담에 관한 사항
3. 학생상담 관련 초청 강연에 관한 사항
4. 연구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5.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6. 학생행복상담센터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7. 장애학생의 개별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변경 2019.07.04]

**제16조(체육부)** 체육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종목별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훈련 및 대회출전 등에 소요되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
3.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4. 각 경기단체 및 체육회에 관한 사항
5. 후원금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
6. 각 종목별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8. 각 종목별 선수들의 취업·경력·경기성적 등에 관한 사항
9. 체육부의 전반적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변경 2019.07.04]

**제17조(인재개발원)** ① 인재개발원은 취업진로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를 둔다.

② 취업진로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 채용 관련 정보수집, 자료선별 게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3. 취업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4. 취업 진로 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5. 취업설명회에 관한 사항
6. 정보지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7. 기업체 D/B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업체 동문회 현황 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취업 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취업진로지원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11. 취업과 진로 교과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직 알선에 관한 사항
13. 취업 관련 행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직업심리검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5. 취업 진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6. 프로그램 만족도 및 환류, 보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7. 인성지도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8. 장애학생(장애인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9.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20.10.16.)
20. (호 삭제 2020.10.16.)
21. (호 삭제 2020.10.16.)
22. (호 삭제 2020.10.16.)

③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3. 센터주관 국내외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참여 기관 발굴 및 협약체결, 관리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참여 학생 사전교육 및 상담, 수행점검,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7. 현장실습 평가 및 업무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습 운영 시기별 실적 내용에 대한 주기적 만족도 및 환류, 보완, 개선 등 체계적 노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④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경력개발
  2. 여학생 취업 진로상담에 관한 사항
  3. 여학생의 취업 관련 정보 수집, 자료선별, 게시 및 추천 의뢰
  4. 여학생의 취업 및 부직에 관한 사항
  5. 프로그램별 만족도 및 환류, 보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6.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호 신설 2020.10.16.)
- [조변경 2019.07.04]

#### 제4절 대외협력처

[신설 2019.07.04.]

**제18조(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대외 각종 기관과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
  4. 총동문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0.10.16.)
  5.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본조신설 2019.07.04]

**제19조(발전기금팀)** 발전기금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발전기금 모금 등 재원확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모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기부 대상자 DB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
  6. 발전기금 대내·외 홍보 및 SNS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본조신설 2019.07.04]

**제20조(국제어학원)** 국제어학원은 국제교류팀을 두며,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계획 수립
  2. 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외국기관의 현황자료 수집 및 학술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유학생 모집,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5. 교환학생 선발(과건, 수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장·단기 해외연수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학부)학사지도, 상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8.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에 관한 사항
  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연수생 모집,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한국어연수생의 학사지도 상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연수생 출·입국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3. 외국어 강좌(영어 등) 운영
  14. 어학 프로그램 홍보 및 어학시험 운영
  15.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본조신설 2019.07.04]

#### 제5절 입학홍보처

[절변경 2019.07.04.]

**제21조(입학팀)** 입학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편입학)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편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3. 입학(편입학)에 관한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입학제도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전형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6. 입시분석자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입시 관련 전산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8. 입학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입학에 관한 홍보
10. 학번부여에 관한 사항
11. 입학사정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입학사정관제 연구에 관한 사항
13. 입학사정관제 전형개발 및 선발에 관한 사항
14. 고교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입학사정관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5. 입학사정관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6. 입학사정관제 입학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22조(홍보팀)** 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전반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조정, 분석, 관리
2. 대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보도자료 송부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4. 홍보 사진 및 사진 필름 제작, 관리 보관
5. 대학의 광고 업무
6. 교사의 편찬과 발행 및 기타 홍보자료의 발간에 관한 사항
7. 학교요람발간에 관한 사항
8. 대학 약사에 관한 사항
9. 대학 종합 이미지 작업(CI, UIP)에 관한 사항
10. 대학홍보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
11. 대학 홍보대사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고교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
13. 대학 입학정보박람회 관련 업무
14. SNS를 통한 대학홍보 및 관리
15. 신입생 홍보설문조사 업무(개정 2020.10.16.)
16. 고교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업무(호 신설 2020.10.16.)
1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호 신설 2020.10.16.)

[본조신설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6절 행정지원처**

[명칭변경 2019.07.04.]

**제23조(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보관 및 관인 사용 통제 사항
2. 문서통제, 수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민원서류 접수, 처리 및 일반업무 사항

5. 일반문서 보관, 보존 업무
6. 전례 의식에 관한 사항
7.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
8. 우편물 접수 관리
9. 각종 회의 및 행사 지원, 회의록 작성 보관
10. 관보 관리
11.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상벌 등 포함)
12. 직원 복무관리, 복지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13. 직원 신원조회 및 신원 특이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직원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연금 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16. 교직원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7. 직원 제증명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18. 차량관리 업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9. 외부공문 발송
20. 인쇄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수위실, 야간경비 운영 업무
22. 학교시설물 사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
23. 법인 관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4. 청소, 경비 용역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보험업무포함)
25. 행정소모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26. 교내 청소에 관한 사항
27.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28. 일용직 수급에 관한 사항
29. 총장 비서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0. 기타 타처,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1. 물품구매 계획 수립 및 구입업무
32. 공사 도급 업무(입찰, 계약)
33. 물품수리에 관한 사항
34. 물품 등록 및 관리
35. 물품 손·망실 및 불용처리
3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 업무(단, 전산 관련 업무는 전산정보팀과 협의 후 결정)
3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24조(회계팀)** 회계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등록금 수납에 관한 사항
2. 학비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업무
5. 교직원 연말정산 관련 업무
6. 제세 및 공과금 납부에 관한 사항
7. 각종 세무 관련 업무
8.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회계전표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지출 및 출납 업무
11. 자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유가증권, 채권 취급에 관한 사항
13. 법인카드 관련 업무

1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15. ~ 23. (호 삭제 2020.10.16.)

[전부개정 2018.11.27., 2020.10.16.] [조변경 2019.07.04]

**제25조(시설팀)** 시설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용재산(건물, 토지, 시설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사후관리
2. 시설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공사·용역 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다만, 시설팀장의 전결권 내의 공사 및 용역)(개정 2020.10.16.)
4.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위치이동, 시설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5. 기본시설(신·증축)의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공사의 시공·감독 및 자재의 검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7. 공사 시공도면 및 건축물대장 정리보관에 관한 사항
8. 기본시설 환경(대기, 수질)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9. 시설물안전에 관한 사항
10. 전기, 통신, 급배수, 난방, 환경, 조경, 소방시설 및 기본시설에 관한 사항
11. 직장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12. 시설 통계 및 통제 업무
13. 시설 관련 일용직 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
15. 시설설비 보수 소모품 구입에 관한 사항
16. 위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 제4장 각 대학 및 대학원

**제26조(각 대학 교학지원팀)** 각 대학 교학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확장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3. 전임교원 초과시간 및 외래교수 출강시간 관리에 관한 사항과 휴·결강 통계에 관한 업무
4. 수업진행 확인 및 관리(휴·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출·결석에 관한 사항
6. 학생 취업 추천에 관한 사항(단과대학장 명의 발급)
7. 강의 진행 및 시험 진행, 강의실 관리에 대한 협조 업무 사항
8. 강사 제청에 관한 협조 업무 사항
9. 취업, 홍보물 게시 협조 업무 사항
10. 학생상담 및 지도 결과 협의에 관한 사항
11. 학생 상·벌에 관한 상신 및 협조 업무 사항
12. 학생 과외활동 지도 결과 협의에 관한 사항
13. 분담 지도교수제 관리운영 및 협조 업무 사항
14. 단과대학별 행사 계획 및 집행 결과 협의에 관한 사항
15. 단과대학·학과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간행물 발간 지도와 협조 업무 사항 (개정 2020.05.13)
16. 실험실습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13)
17. 실험실습기구 보관 관리에 관한 협조 업무 사항
18. 현장실습 및 견학 계획

19. 대학내 비품 관리에 관한 협조 업무 사항
  20. 우편물 전달
  21. 교수업적평가 실적에 대한 1차 심의와 관련한 업무
  22. 교원의 국내·외 출장중 사무에 관한 사항
  23. 학과소속 조교 인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3)
  24. 학적(휴학, 복학)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3)
  25. 계약학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3)
  26. 학과·학문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3)
  27. 학과단위 교육수요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3)
  28. 단과대학·학과 학생교의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3)
  29.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호 변경 2020.05.13.)
-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27조(대학원지원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대학원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3. 수업 진행 및 시험 관리, 출·결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칙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각 위원회 운영 및 주임교수 회의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외래교수, 주임교수 인사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적부 작성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학원 강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9. 학술연구회(학생자치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10. 학적변동(휴학, 퇴학, 제적, 복학, 재입학등)에 관한 사항
  11. 대학원생 병사 관계에 관한 사항
  12. 대학원생 상·벌에 관한 사항
  13. 학적 관계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4. 학위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15. 장학에 관한 사항
  16. 교학 관계 제반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17.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실험실습비(교과운영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9. 공개강좌·연구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21.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지도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 제5장 부속·부설기관

### 제1절 부속기관

**제28조(학술정보원 학술지원팀)** 학술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장 직인 및 장서인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2. 학술정보원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3.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4. 학술정보원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및 선정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6. 학술정보자료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7. 학술정보자료의 분류 및 편목, 장비 작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8. 학술정보자료의 기증 및 수증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9. 학술지원팀 문서수발, 편철 및 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0. 도서 원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1. 학술정보자료의 제본 및 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2. 각 열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3. 학술정보자료의 관내·외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4. 학술정보 이용 지도 및 통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5. 학술정보자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6. 연체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7. 타 대학도서관 및 학술정보기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8. 대학도서관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19. 학술지원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6.)
  20.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20.10.16.)
  21. ~ 23.(호 삭제 2020.10.16.)
-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29조(학술정보원 전산정보팀)** 전산정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및 학술정보원의 전산화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컴퓨터 및 전산망의 관리·운영
  3. 전산관련 장비 구매계획 수립
  4. 전산망 보안 관련 업무
  5. 학사·행정업무의 개발, 운영 및 전산 처리 업무
  6. 프로그램 및 정보, 파일 관리
  7. 전산관련위원회 소집 및 사무처리
  8. 교수, 직원 및 학생의 컴퓨터 실습 지원
  9. 컴퓨터 이용에 관한 상담
  10. 교내 전산망 이용 및 교육상담
  11. 전산실습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보안 관련 업무
  1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산 관련 업무
  1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30조(생활관)** 생활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관 운영 및 관생수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관생 자치회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생 생활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각종 행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내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입·퇴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31조(실습목장)** 실습목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목장경영관리에 관한 서류의 유지,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목장운영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선정 및 시설 증·개축 요청에 관한 사항
3. 우유의 생산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가축의 도태, 매각, 구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32조(실습농장)** 실습농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장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33조(상지미디어센터)** ① 상지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지미디어센터의 정기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정규뉴스와 관련된 편성과 제작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웹진과 관련된 학술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부개정 2018.11.27., 2020.10.16.] [조변경 2019.07.04]

**제34조(중앙기기센터)** 중앙기기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기자재의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동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단과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의 구입에 관한 조정
  4. 실험실 안전관리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35조(고시원)** 고시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국가시험준비를 위해 필요한 특강 실시에 관한 사항
  2. 고시 관련 정보제공 및 지도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36조(보건소)**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및 학생의 진료통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37조(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교직원 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벤처창업 관련 사업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교내 창업 관련 정책개발 및 대학평가 지표 대응에 관한 사항
  5. 창업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외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본조신설 2019.07.04]

**제38조(인권센터)** 인권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내 구성원 간 또는 당사자 일방만의 인권침해, 갑질 등 관련 민원·고충 처리 및 갈등·분쟁조정 상담과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13)
2.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정책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과 조사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상담에 관한 사항
7.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9.07.04]

## 제2절 부설기관

**제39조(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성인교육의 실시 및 공개강좌의 개설
2. 봉사교육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3. 평생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개발 및 보급
4. 연구지의 발간
5. 담당 부서가 불명확한 교육·훈련·연수사업(외부 연구비 지원사업 제외)
6.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제40조(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
3. 연수 교육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 제6장 부설연구소(원)

**제41조(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원)의 사무분장은 각 연구소(원)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8.11.27.] [조변경 2019.07.04]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관리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리실은 제13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99학년도 대학평가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81401-768, 2003.9.26)

이 규정은 200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111, 2004.2.16)

이 규정은 200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288, 2004.4.14)

이 규정은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479, 2004.6.16)

이 규정은 200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759, 2004.9.21)

이 규정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79, 2005.1.24)

이 규정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753, 2005.7.21)

이 규정은 200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938, 2005.9.6)

이 규정은 2005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1084, 2005.10.18)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292, 2006.3.20)  
이 규정은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368, 2006.4.10)  
이 규정은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502, 2006.5.22)  
이 규정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1063, 2006.11.13)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23, 2007.1.3)  
이 규정은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507, 2007.5.7)  
이 규정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529, 2007.5.14)  
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758, 2007.7.12)  
이 규정은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117, 2008.1.21)  
이 규정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636, 2008.5.20)  
이 규정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784, 2008.7.7)  
이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1043, 2008.9.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172, 2009.2.18)  
이 규정은 2009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268, 2009.2.27)  
이 규정은 200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732, 2009.6.15)  
이 규정은 2009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1245, 2009.10.26)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1497, 2009.12.21)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657, 2010.5.25)  
이 규정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841, 2010.7.14)  
이 규정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1016, 2010.9.2)  
이 규정은 201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585, 2011.5.6)  
이 규정은 201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715, 2011.6.2)  
이 규정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955, 2011.8.11)  
이 규정은 2011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1043, 2011.9.8)  
이 규정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1272, 2011.11.7)  
이 규정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155, 2012.2.1)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352, 2012.3.14)  
이 규정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392, 2013.7.5)  
이 규정은 201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580, 2013.9.25)  
이 규정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30, 2014.1.9)  
이 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84, 2015.1.27)  
이 규정은 201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437, 2015.7.22)  
이 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115, 2016.2.16)  
이 규정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518, 2016.06.21)  
이 규정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284, 2017.06.29)  
이 규정은 2017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328, 2017.08.16)  
이 규정은 201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585, 2018.11.27)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352, 2019.07.04)  
이 규정은 2019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336, 2020.05.13)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657, 2020.10.16)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16, 2021.01.13)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77, 2021.02.04)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